



교육감 규정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항목: 학생

발행: 2026 년 6 월 18 일

변경 내용 요약

본 규정은 2017 년 9 월 28 일자 규정 A-750 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직원들이 아동 학대나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에 걸쳐 "의무 신고자"를 "신고자"로 변경합니다.
- 규정 전반에 걸쳐 현장 지원 센터 디렉터를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로 변경합니다.
- SCR 보고서 및 ACS 대응과 관련된 신고를 ILOG에서 OORS로 변경합니다.
- 명확성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섹션들을 재조정 및 다시 번호를 매겼습니다.

섹션 I. 정의

-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 NYCPS LYFE 센터 및 뉴욕시 조기 교육 센터의 직원들이 신고 목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 "아동 학대"와 "아동 부당대우"라는 용어의 정의를 뉴욕주 법 및 규제 지침에 맞게 수정합니다.

섹션 II.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의 뉴욕주 차원의 중앙 등록 센터 신고 절차

- 아동 학대 및/또는 부당대우 의심 신고 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하위 섹션을 추가하고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직원들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 객관적 사실, 전문적 판단 및 관련 교육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SCR에 신고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하위 섹션을 추가합니다.
- SCR 신고를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적 방임을 근거로 한 부당대우 의심 신고 관련 하위 섹션을 수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합니다:
 - 학교 출석 불량 및 그 자체만으로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교육적 방임에 기반한 신고는 반드시 손해 또는 임박한 손해 위험과 실패한 참여 노력을 입증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고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연락 정보를 SCR에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 신고자가 조사 결과 요약 통지문이 작성되었을 때 받아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SCR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규정서에 사용된 "학교장"이라는 직책은 또한 NYCPS에서 관리하는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다음을 포함한 동일한 사실에 기반한 또다른 신고자가 있다고 믿을 때 신고 절차를 분명히 합니다:
 - 신고자는 반드시 학교장/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 신고자는 만약 학교장/대리인이 또다른 신고가 있었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학교장/대리인이 "콜 I.D."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 보고서(LDSS-2221-A)는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자 및/또는 교장/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ACS 보로 사무실에 서면 보고서의 이메일 전달 요건에 관한 절차를 갱신하고 갱신된 연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어떤 학생이 인신매매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NYCPS 직원은 반드시 인신매매 학교 안전 프로토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합니다.
- SSA/NYPD와의 조정 및 ACS 도착이 지연될 경우 아동에 대한 감독 유지와 관련된 요건을 포함한 긴급한 위험에 처한 아동 케이스에 대한 절차를 갱신합니다.

-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되는 경우 부상을 사진 촬영하는 정책을 갱신합니다.
 -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학교 직원들은 반드시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사례를 신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SCR에서 법 집행 기관 추천을 한 경우, 학교에서 법 집행 기관에 추가적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섹션 III.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의 보고에 대응하기 위한 ACS 와의 협력 절차

- CPS 직원이 아동에게 겹옷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ACS에서 사용하는 양식(DCP-048) 명칭을 갱신합니다.
- CPS 직원이 학생을 구금하려고 하거나 한 명 이상의 MDT 멤버가 학생을 CAC/CPC로 데려가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SCR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대체 아동 보호 대응인 협력 평가, 응답, 참여 및 지원(CARES) 케이스에 대한 하위 섹션을 추가합니다.
 - 케이스가 CARES 트랙에 있는 경우, 학교 직원은 반드시 ACS와만 교육 기록을 공유할 수 있고/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ACS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섹션 IV. 아동 복지와 관련된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Tiered Response Protocol)은 출석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안전 프로토콜임을 강조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 위탁 보호에 들어가거나 위탁 보호에서 퇴거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OASIS에 입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결석에 대한 학부모의 불충분한 설명이 학생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경우 ACS에 우려를 의무적으로 명시합니다.
- 배정된 학교 직원이 NYCPS 위탁 보호 담당실에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출석 불량 만으로는 SCR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섹션 V. 신고자의 법적 문제

- 법률 지원을 위한 연락처를 포함하여 소환장에 대한 지침을 갱신합니다.
- 일반 지방 자치법 § 50-k에 따른 대리 및 배상 자격을 분명히 합니다.

섹션 VII. 직원 연수 및 학부모 및 학생 교육

- 학교 직원을 위한 연수에는 반드시 가정에 제공 가능한 리소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 ACS 지원 라인의 전화 번호를 추가합니다.
- 뉴욕주 법에 부합하여, K-8학년 학생들은 아동 착취와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Infohub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리소스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의 종류 설명을 제공합니다.

섹션 VIII. NYCPS 직원에 의한 위법 행위 신고 의무

- 특별 조사관(Special Commissioner of Investigation)에게 보내는 어떤 신고도 교육감 규정 A-820에 따라 학생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섹션 IX. 통지

- 각 학교에서 ACS 연락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항목: 학생

발행: 2026 년 6 월 18 일

목차

머리말.....	3
I. 정의	3
II.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의 뉴욕주 차원의 중앙 등록 센터 신고 절차.....	5
A. 아동학대 및/또는 부당대우 의심 사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5
B. 합리적인 근거 판단	6
C. 교육적 방임으로 인한 부당대우 의심 신고	6
D. 신고하기	7
E. 긴급한 위험에 처한 아동 케이스 절차.....	11
F.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될 때 부상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정책.....	11
G. SCR 이 신고를 기각 및/또는 신고를 경찰로 인계한 경우 절차.....	14
III.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신고에 대한 ACS 대응 협력 절차	15
A. ACS 초기 조사.....	15
B. 학생을 다분야 팀 조사 또는 기타 아동 보호 서비스 이동을 위해 아동 옹호 센터/아동 보호 센터로 이송	17
C. 차등 대응 케이스 (협력 평가, 대응, 참여 및 지원(Collaborative Assessment, Response, Engagement and Support: CARES)).....	19
IV. 아동 복지와 관련된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	19
A.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	19
B.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 파악	20
C. 검토 및 평가	21
D. ACS 또는 ACS 기관 파트너에 우려 필수 보고.....	22
E. SCR 에 우려 보고	23
V. 신고자에 대한 법적 문제	23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

A.	책임 면제	23
B.	신고하지 않은 경우 책임 및 처벌	24
C.	보복 조치 금지	24
D.	학교 교직원 소환 서비스	24
E.	법적 변호를 요청할 직원의 권리	24
VI.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의 책임	25
A.	학교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	25
B.	수퍼인텐던트 사무실	26
VII.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및 학생 교육	26
A.	교직원 연수	26
B.	학부모 참여	27
C.	학생 교육	28
VIII.	NYCPS 직원에 의한 위법 행위 신고 의무	28
IX.	통지	29
X.	OORS 신고	29
A.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OORS 신고	29
XI.	기술적 지원	30
XII.	문의	30

요약

본 규정은 2017 년 9 월 28 일자 규정 A-750 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

뉴욕주 사회 복지 서비스법에 따라, 학교 관계자는 의무 신고자이며 본인의 직무 범위에서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접하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뉴욕시공립학교(NYCPS) 직원이 법적으로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3

이러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또한 가정을 커뮤니티 기반 지원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아울러 본 규정은 뉴욕시 아동 복지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이 실시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NYCPS 직원의 의무 및 아동 복지 중재를 받고 있거나 결석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공립 학교가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들에게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주 법 요건에도 대응합니다.

머리말

아동이 18 세 미만이고 학부모, 보호자, 후견인 또는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다른 개인이 아동에게 상당한 해를 입힐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유발하거나,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살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아동은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NYCPS 학교 직원들은 신고자로서 아동 학대 및 아동 부당대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례를 즉시 뉴욕주 전역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중앙 센터(SCR)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규정에 정의된 아동 학대나 아동 부당대우 이외의 의심되는 범죄 활동에 대한 우려 및 NYCPS 직원 또는 NYCPS 학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우려는 [교육감 규정 A-412](#)를 참고하십시오.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거나 아동에게 즉시 의료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즉시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412](#)를 참고하십시오.

I. 정의

다음은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학부모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4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라는 용어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또는 학부모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도록 지명한 사람(loco parentis) 또는 [교육감 규정 A-101](#)에 따라 명시된 기타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person legally responsible: PLR)에는 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해당 시점에 아동을 보살필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후견인에는 아동과 같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함께 지내는 18 세 이상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상, PLR에는 NYCPS LYFE 센터의 직원과 뉴욕시 조기 교육 센터(NYCEEC)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아동 학대

18 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PLR)이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i) 사고가 아닌 상황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상해가 가해지도록 허용하는 경우, (ii) 사고가 아닌 상황으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올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만들거나 그러한 위험이 만들어지도록 허용하는 경우, 또는 (iii)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지도록 허용하는 경우.

아동 부당대우

아동 부당대우(방임 포함)는 18 세 미만 아동에 대해, 그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부당대우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PLR)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동이 임박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 a. 재정적으로 가능하거나 재정적 지원 또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받은 후에도, 아동에게 적절한 음식, 의복, 주거, 교육("교육적 방임") 및/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적 방임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학교 학군 또는 지역 교육 기관 및 아동 보호 기관이 그러한 교육 서비스 미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 b. 아동에게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아 비합리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5

입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약물이나 알코올을 오용하여 아동을 적절히 감독할 능력에 지장을 주는 경우, (b)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또는 (c) 가정 법원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와 유사한 심각한 성격의 기타 행위; 또는

2.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아동 학대나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사실 관찰과 전문적인 연수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자가 학부모 또는 다른 PLR 이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동을 임박한 위험에 빠뜨릴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를 SCR 에 신고 당하는 사람입니다.

II.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의 뉴욕주 차원의 중앙 등록 센터 신고 절차

A. 아동학대 및/또는 부당대우 의심 사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1. 직무 또는 공적 관련 활동에서 학생이 이들에게 찾아올 경우, 다음 직원들은 의무 신고자로 간주됩니다: 교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 심리상담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행정직원 또는 교직이나 행정 면허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타 직원 및 운동 코치를 포함한 NYCPS 학교 관계자는 사회 복지 서비스 법에 따라 의무 신고자입니다.
2. 학교 에이드, 관련 서비스 제공처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같이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 직원 중 위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NYCPS 정책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고/또는 학생들과 직무 관련 과정에서 소통할 때 신고자로 간주됩니다.
3. 또한, 시설 관리 직원 및 학교 급식 직원 등을 포함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타 직원들은 비의무 신고자이지만,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권장됩니다. 본 규정의 목적상, 의무 신고자와 관련된 모든 행동 및 논의는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범위를 제외하고는 비의무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6

신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의무 신고자가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신고자는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합리적인 근거 판단

1. SCR에 신고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때 신고자는 비판적 사고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위 섹션 I의 정의는 NYCPS 직원이 언제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자는 신고를 하기 전에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있었다고 확신할 필요가 없으며, 아동을 면담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제공되었거나 관찰된 정보를 명확히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뉴욕주와 NYCPS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고자의 판단이 편견(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개인적 신념, 가치관 및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 개인적 편견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b.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c. 저소득 그 자체만으로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d. 학교 출석 불량 그 자체만으로는 신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섹션 II.C 참조).
3. 신고자는 전문적 역할 안에서 SCR 신고를 할 법적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과 서비스를 통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 지원 서비스는 해당 가정에 아동 보호 사건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SCR에 전화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 교육적 방임으로 인한 부당대우 의심 신고

1. 학교 출석 불량 및 그 자체만으로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는 결석으로 인해 아동에게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7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이 임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만 SCR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들은 먼저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필요와 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2. 교육적 방임과 관련하여 SCR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 a. 아동은 반드시 의무 학령기여야 하며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b. 아동은 반드시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하게 결석을 해야 합니다
- c. 반드시 과도한 결석으로 인해 아동의 교육에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또는 아이가 개별 교육 계획(IEP)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석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놓쳤습니다)
- d. 단순히 집으로 통지를 보내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 또는 기타 PLR가 심각한 결석 및 손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e. 학교 관계자들은 출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및 학부모 또는 기타 PLR를 참여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예시는 [교육감 규정 A-210](#) 참조), 및
- f. 학부모 또는 다른 PLR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3. [교육감 규정 A-210](#) (프로그램 출석 기준)은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해 양식 407 출석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교육적 방임 신고는 반드시 양식 407 조사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섹션 II.C.에 규정된 모든 교육적 방임 신고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D. 신고하기

1. 18세 이하의 아동이 공적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인 신고자에게 오게 되고 신고자가 해당 아동이 학부모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PLR)에 의해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신고자는 즉시 이러한 의심에 대해 1-800-635-1522로 전화하여 그 의심 사항을 SCR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학부모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PLR)이 신고자의 공적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인 신고자에게 와서,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 조건 또는 상황을 말하고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일 때,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받은 아동이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고자는 섹션 II.D.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즉시 그 의심 사항을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8

SCR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자는 자신이 해당 정보를 아는 한 신고 내용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NYCPS 직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와 본인의 연락처를 SCR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반드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하며, 신고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지와 장애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4.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학대 혐의 신고 요건은 섹션 II.C.를 참고하십시오. 학생 결석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여 원인을 판단하는 절차는 [교육감 규정 A-210](#)(출석 프로그램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신고자는 반드시 SCR에 "콜 I.D." 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콜 I.D." 번호는 반드시 유지되어 신고자와 학교 교직원이 OCFs LDSS-2221A 서면 신고서와 NYCPS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ORS) 신고를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섹션 II.D.8 및 x 참조). 신고자가 조사 결과 요약 통지문이 작성되었을 때 받아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SCR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SCR에 신고를 한 후 신고자는 반드시 즉시 (수업일이 끝나기 전)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한 담당자에게 알리고 콜 I.D.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본 규정에 사용된 대로 "학교장"은 또한 NYCPS에서 관리하는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의미합니다. NYCPS 건물의 학교 및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장 대리인은 반드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의 일원이어야 합니다(섹션 v 참조). 본 규정과 관련한 학교장의 책임은 아래 안내됩니다. 학교장이 이러한 의무를 대리하도록 지명하는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매년 대리인을 재지명해야 합니다.
7. 신고자가 아동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동일한 사실, 조건 또는 상황에 근거하여 학교 내 다른 신고자가 이미 SCR에 신고했다는 것을 직접 알고 있는 경우, 신고자는 즉시 학교장/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다른 신고가 이루어졌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해당 "콜 I.D." 번호를 신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다른 신고가 이루어지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거나, 학교장/대리인이 신고자에게 "콜 I.D."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는 반드시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9

즉시 SCR에 전화로 신고하고 위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8. 신고자 및/또는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SCR에 구두 신고를 한 후 48시간 이내에 LDSS-2221A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신고서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고한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교직원의 이름, 직위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 정보 b) 장애 아동과 관련된 학대 또는 부당대우 신고의 경우 아동의 장애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설명 c) SCR이 제공한 "콜 I.D." 번호. 신고자는 반드시 학부모 또는 기타 PLR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나타내는 해당 신고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또한 양식의 "신고자의 조사 결과 요청"에 있는 "예" 박스를 표시하여 조사 결과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사본은 [NYCPS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DSS-2221A 서면 신고서는 반드시 신고서 작성자, 학교장, 수퍼인텐던트 대리인이 거주하는 보로의 지역 ACS 사무실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CS 보로 사무소 및 수퍼인텐던트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는 InfoHu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학교는 반드시 모든 LDSS-2221A 서면 신고서의 사본을 "아동학대 의심 신고"라고 표시한 파일에 보관하고, 해당 파일을 학교장/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서 사본은 반드시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에게도 송부해야 하며, 학생 서비스 매니저 또한 해당 신고서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중재 관련 학생 서비스 매니저의 책임은 섹션 VI.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신고자가 이미 신고한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신고자는 반드시 추가 정보 습득 24시간 이내에 SCR로 전화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임을 명시하고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추가 교직원이 있다면 그 이름, 직위, 연락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에 새로운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LDSS-2221A 서면 신고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SCR에 전화한 후, 신고자는 반드시 추가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학교장/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전에 제출된 LDSS-2221A 서면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정보를 포함시키고, 섹션 II.D.8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0

합니다.

11. 신고자가 동일한 아동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이전 신고의 근거가 되었던 사실, 조건 또는 상황과는 다른 사실, 조건 또는 상황에서 비롯된 학대 또는 부당대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SCR에 신고해야 하며, 섹션 II.D.8에 따라 새로운 LDSS-2221A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ACS 연락 정보

LDSS-2221A 서면 신고서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브롱스: dcp.bronxdss-2221a@acs.nyc.gov

브루클린: dcp.brooklynldss-2221a@acs.nyc.gov

맨해튼: dcp.manhattanldss-2221a@acs.nyc.gov

퀸즈: dcp.queensldss-2221a@acs.nyc.gov

스태튼 아일랜드: dcp.statenislandldss-2221a@acs.nyc.gov

특수 조사 담당실(OSI)¹: OSI-appl@acs.nyc.gov

12. NYCPS 직원은 반드시 기숙 배정 환경에서 직원이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특수한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 학대나 부당대우를 의심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SCR이 아닌 뉴욕주 정의 센터의 취약 인구 중앙 등록부 (VPCR)의 전화번호 (855) 373-2122로 신고해야 합니다.
13. 신고자가 SCR에 신고한 것은 비밀이 보장되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는 반드시 학교 일과 시간이 아닐 때 ACS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름과 연락처를 SCR에 제공해야 합니다. ACS 직원은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고자의 학교 소속을 학부모, 신고 대상 또는 가족에게 조사 중 밝힐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복지 서비스 법에 따라 NYCPS 직원은 학부모, 신고 대상자, 가족 또는 정보를 받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모든 개인에게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학교가

¹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 대상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1

신고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ACS, 법원, 대배심원, 검사, 경찰 또는 기타 열람이 구체적으로 허가된 기관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²

신고자는 본 규정이나 관련 법률의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학교 직원들 사이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NYCPS 직원이 신고자의 정보를 법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신고자에게 있다면 반드시 법률 서비스 담당실에 전화 212-374-6888로 신고해야 합니다. ACS 직원이 신고의 대상이거나 ACS 직원이 학부모나 가족에게 신고자의 신원이나 학교 소속을 밝혔다고 학교 직원이 생각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ACS 안전 우선 담당실에 718-543-7233로 전화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4. 어떤 학생이 인신매매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NYCPS 직원은 반드시 인신매매 학교 안전 프로토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 긴급한 위험에 처한 아동 케이스 절차

1. 언제라도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아동에게 의료 케어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412](#) 참고.
2.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SCR에 접수된 학교 수업일 당일에 ACS에게 연락 받지 않고 아동이 집으로 귀가하였고 아동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에게 이를 알리고 SSA/NYPD에게 긴급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ACS가 학교로 가는 중이고 하교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SSA/NYPD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직원은 반드시 ACS가 도착할 때까지 아동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F.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의심될 때 부상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정책

1.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외상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 NYCPS의 정책입니다.
 - a. 반드시 적절한 뉴욕시 연수를 완료한 사람만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² 법정 절차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학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2

최소 각 학교에서 학교 간호사와 연락 담당자(섹션 VI.A.2에 부합하여 아동 학대와 부당대우 사안에 대해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와 연락을 담당하도록 학교장이 지명한 교직원)는 반드시 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 당 최소 2명의 교직원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에 학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대체 교직원이 연수를 받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교직원들이 이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림 및 SCR에 신고

- a. 의무 신고자가 눈에 보이는 외상을 관찰하고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무 신고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a) 사진 촬영의 목적으로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사안과 눈에 보이는 외상을 알리고, (b) 섹션 II.D에 따라 그 후 즉시 SCR에 구두로 신고하며, 섹션 II.D.6에 따라 즉시(학교 수업일 종료 전) 학교장/대리인에게 "콜 ID"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b. 학교장/대리인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사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상에 대해 알게 되면 학교장/대리인은 아래 명시된 절차에 따라 즉시 학교 간호사나 연락 담당자 또는 기타 연수를 받은 다른 교직원이 눈에 보이는 부상의 사진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 c. 사진을 찍은 연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SCR에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반드시 "콜 I.D." 번호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반드시 SCR에 즉시 전화하여 신고하고 섹션 II.D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d.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사진 촬영 후 24시간 이내에 연락 담당자가 사진 촬영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락 담당자에게 사진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e. 신고자는 섹션 II.D.8에 따라 반드시 서면 LDSS-2221A 신고서를 SCR에 구두 신고한 후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반드시 양식의 "취해진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3

조치 또는 곧 취할 조치" 섹션에 "사진" 박스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사진 촬영

- a. 사진은 반드시 아동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연수를 받은 직원에 의해 촬영되어야 합니다.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사진 촬영을 위해 학생을 양호실이나 학교의 의무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 b. 사진은 학교 또는 학교 행정직원에게 배정된 뉴욕시 소유의 기기로 촬영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소유한 기기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 c. 아동의 생식기, 회음부 또는 가슴 부분은 촬영이나 검사를 절대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ACS에 아동의 부상 사진 보내기

- a. 사진 촬영 후 사진을 담고 있는 기기를 반드시 연락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b. 연락 담당자는 반드시 다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SCR "콜 I.D." 번호, 학생 이름, 학생의 OSIS 번호, LDSS-2221A 서면 보고서 제출 날짜.
- c. LDSS-2221A 서면 보고서 제출 시 또는 그 후 최대한 빨리 연락 담당자는 반드시 뉴욕시 소유 기기를 이용해 NYCPS가 개발한 절차에 따라 사진을 첨부한 암호화 된 이메일을 아래 안내된 보로 별 지정 ACS 이메일 인박스로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은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SCR "콜 I.D." 번호, 학생 이름, 학생 OSIS 번호, 첨부된 사진 개수, 보내는 사람 이름, 학교 이름 및 DBN.

브롱스: DOEPHOTOSBronx@acs.nyc.gov

브루클린: DOEPHOTOSBrooklyn@acs.nyc.gov

맨해튼: DOEPHOTOSManhattan@acs.nyc.gov

퀸즈: DOEPHOTOSQueens@acs.nyc.gov

스태튼 아일랜드: DOEPHOTOSStatenIsland@acs.nyc.gov

5. 사진의 유지 및 보관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4

- a. 연락 담당자는 반드시 사진의 사본을 출력해야 합니다. 섹션 II.D.9.에 따라 사진은 반드시 LDSS-2221A 서면 보고서와 함께 학교장/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와 사진은 비밀이 보장되는 문서이며 신고 대상자, 학부모 또는 가족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섹션 II.D.1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서비스 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받도록 허가된 사람에게만 공유됩니다.
- b. 사진이 ACS에 전달되고 사진의 사본을 복사한 후 연락 담당자는 반드시 ACS로부터 이메일 수신 확인을 저장하고 뉴욕시 소유의 기기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ACS에 보낸 이메일과 첨부된 사진을 삭제해야 합니다.
6. SCR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신고를 기각할 경우 사진 관련 절차
 - a.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학교 직원들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사례를 신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진이 촬영되고 SCR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신고를 기각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신고가 기각되었음을 반드시 연락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연락 담당자는 즉시 뉴욕시 소유 기기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해야 합니다. 사진의 사본을 복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G. SCR 이 신고를 기각 및/또는 신고를 경찰로 인계한 경우 절차

1. SCR 운영자가 신고 접수를 기각한 경우, 신고자는 SCR 수퍼바이저가 해당 신고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반드시 SCR 운영자 및/또는 전화를 받은 수퍼바이저의 이름을 받고 학교장/대리인에게 신고를 했으나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문서화한 OORS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특정 사건의 경우 SCR는 법 집행 기관 의뢰(Law Enforcement Referral: LER)를 하고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신고에 대해 NYPD의 수사를 의뢰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반드시 경찰 조사 및 검찰에 협조해야 합니다. SCR에서 LER을 한 경우, 학교에서 법 집행 기관에 추가적인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NYPD가 학부모와 관련된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에 대해 학생을 조사할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같은 집에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 학대 진술에 대해 학생을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5

조사할 경우 학교장은 경찰과 논의하여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학교장 또는 아동이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담에 동석해야 합니다.

4. 아동의 학생 기록은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명시된 조건 및 안전 긴급상황 예외 조항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학교에 알리는 경우, 학교 관계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게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록의 공개가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12](#) (학교 내 보안)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NYPD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학생을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b) NYPD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가 아닌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의 학생 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III.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신고에 대한 ACS 대응 협력 절차

A. ACS 초기 조사

1. ACS는 SCR이 지역 ACS 사무실에 조사 대응이 필요한 보고서를 전송할 때 초기 아동 보호 조사를 수행합니다. 케이스에 배정된 ACS 아동 보호 전문가(CPS 담당자)는 신고자와 신고 사유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학교의 모든 인물을 면담합니다.
2. 모든 학교 직원은 혐의 신고가 학교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는가에 상관없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에 대한 아동 보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3. 다음은 CPS 담당자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에 대해 학교 경내에서 아동 보호 평가를 하고자 할 때 학교 교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 a. 학교장/대리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b. CPS 담당자가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담당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CPS 담당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CPS 담당자가 학교 직원과 전화로 소통할 때 교직원은 전화하는 사람에게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6

반드시 ACS 이메일 주소나 ACS 레터헤드 팩스를 사용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c. 신원이 확인되면 CPS 담당자에게 가족 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에 규정된 보건 및 안전 비상 상황 예외 조항에 따라 해당된다면 IEP와 평가를 포함해 신고에 명시된 아동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그 형제 자매(들)의 모든 관련 학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런 정보의 열람 권한이나 사본을 제공하기 전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기록 제공이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CPS 담당자가 요청한 기록을 전자(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실물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d. 신원이 확인되면, CPS 담당자는 반드시 아동 보호 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PS 담당자나 아동이 요청하면 아동과 잘 아는 교직원이 아동 면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담에 참석하는 학교 교직원 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법정에 증언하도록 소환될 수 있습니다.
- e. CPS 담당자가 학부모와 관련된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에 대해 학생을 조사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가 학부모가 아닌 PLR에 대한 것인 경우, 학교장은 ACS와 협의하여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f. 조사를 실시할 때 CPS 담당자들은 학대나 부당대우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아동에게 겹옷을 벗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CPS 담당자, 학교 교직원 또는 학교 간호사가 동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CPS 복지사가 아동의 겹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조사를 위해 아동의 속옷을 벗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Section III.B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검사를 위해 반드시 아동을 병원이나 아동 보호 센터로 데려가야 합니다.
- g. 조사를 실시할 때 CPS 담당자는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드시 학교 경내에서 학대 또는 부당대우 의심 사안 신고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해당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그 아동의 형제자매를 면담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7

B. 학생을 다분야 팀 조사 또는 기타 아동 보호 서비스 이동을 위해 아동 옹호 센터/아동 보호 센터로 이송

개인 상황에 따라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추후 조치 및/또는 추가 평가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 발생합니다: (a) ACS 담당자 또는 NYPD 가 감호(protective custody)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 또는 (b) 아동에게 친근한 환경에서 다분야 팀(Multidisciplinary Team: MDT) 조사를 하기 위해 학생을 아동 옹호 센터(Child Advocacy Center: CAC) 또는 아동 보호 센터(Child Protective Center: CPC)로 이송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학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학생이 감호 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 ACS 또는 CPS 담당자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을 데리고 나와 감호시킵니다.

2. CAC/CPC로 학생 이송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및/또는 극심한 부당 대우가 관여된 사안의 경우 학생을 MDT 멤버가 MDT 조사를 위해 CAC/CPC 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MDT 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ACS, NYPD, 지방검찰 사무실, 사회 복지사, 아동 학대 관련 소아과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 증거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조직적으로 수집되도록 합니다.
- b. 반복되는 면담을 줄이고 가능한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공동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합니다.
- c.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피해자를 신속히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d. 피해 아동과 가해자가 아닌 양육자를 위한 위기 개입, 피해자 옹호, 정신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CPS 담당자가 학생을 감호하려고 하거나 MDT 멤버가 학생을 CAC/CPC로 데려가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a. 법원 명령 또는 DCP-048 양식(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긴급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8

상황임을 나타내는 ACS 서면 의견서)를 제시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CPS 담당자가 아동을 데려가 감호하는 것을 허가해야 합니다. DCP-048 양식은 반드시 케이스 담당자 또는 수퍼바이저가 서명해야 합니다. CPS 담당자가 법원 명령이나 DCP-048 양식을 제시하지 못하면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CPS 담당자의 수퍼바이저에게 ACS가 아동을 반드시 감호에 배정되도록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대리인은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b. 학교는 MDT 멤버가 CAC/CPC MDT 허가 양식을 제시하면 학생을 CAC/CPC로 데려가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허가 양식은 반드시 담당 MDT 멤버가 서명해야 합니다. 허가 양식은 [NYCPS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반드시 CPS 담당자 또는 MDT 멤버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직원은 CPS 담당자나 MDT 멤버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 c. 학생을 학교에서 데려가 감호하거나 CAC/CPC로 데려가는 경우 즉시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매니저는 반드시 모든 학생 이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d. 학교는 반드시 법원 명령, DCP-048 양식 또는 CAC/CPC MDT 허가 양식을 학교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e. CAC/CPC 면담을 위해 학생을 데려가는 경우 아동이 MDT 멤버와 가는 것이 불편해 보이거나 아동 또는 MDT 멤버가 요청한다면 학교 교직원 중 한 명이 아이와 MDT 멤버와 함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 실제 면담에는 학교 교직원이 동석하거나 참관할 수도 없습니다.
- f. MDT 회원이 학생을 CAC/CPC로 이송하는 경우 MDT 회원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연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는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생이 CAC/CPC로 이송되었음을 알리고 연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g. NYCPS 직원은 더 이상의 평가를 위해 학생을 이송할 책임이 없습니다. MDT 멤버는 아동을 CAC/CPC로 이송하는 것과 학교, 가정 또는 기타 적절한 목적지로 아동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19

- h. 학교는 반드시 모든 학생 이송과 감호 조치 및/또는 MDT 조사를 위한 CAC/CPC로 이송을 OORS에 기록해야 합니다.

c. 아동 대응 케이스 (협력 평가, 대응, 참여 및 지원(Collaborative Assessment, Response, Engagement and Support: CARES))

신고에 대응하여 초기 검토를 완료한 후, ACS 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케이스를 조사 대신 아동 대응 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협력 평가, 대응, 참여 및 지원(CARES)은 SCR 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대안적 아동 보호 대응 방식으로, 뉴욕주 법에 의해 승인되고 절차를 따릅니다. 아동에게 즉각적이거나 긴급한 위험이 없고 심각한 아동 학대 혐의가 없는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 CARES 는 가족과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필요를 평가하고, 가족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장려하며,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리소스를 확인합니다. CARES 트랙은 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학부모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PLR)이 아동을 학대했거나 방임했을 수 있다는 판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CARES 트랙에 배정된 신고의 경우, ACS는 7일 이내에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한지 평가합니다. 이 평가 중 또는 CARES 대응 중 언제든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아동 보호 조사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케이스가 CARES 트랙에 있는 경우, 학교 직원은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ACS와 교육 기록을 공유할 수 있고/또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ACS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IV. 아동 복지와 관련된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

A.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은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들의 안전을 검토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입니다. 출석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만성 결석 학생 또는 만성 결석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attendance>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0

본 규정의 목적에 따라, NYCPS 학생 중 (i) 위탁 보호 중인 경우, (ii) 법원 명령 감독 하에 있는 경우, 그리고 (iii) 현재 ACS 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현재 학년도 또는 직전 학년도에 ACS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된 SCR 신고에 이름이 있는 학생은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으로 지칭됩니다.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은 아래 섹션 IV.B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의 결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의 안전이 위협에 처해 있거나 가족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학교는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의 출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210](#)에 명시된 출석 관련 요건을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의 출석을 검토할 때, 학교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연락, ACS로의 우려 사항 보고 및 OORS 보고와 같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2. 본 규정에서 말하는 “설명이 충분한 결석”이란 학부모에게 연락을 진행한 직원과의 상담에 대해 학교장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한 결석 사유 설명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a) 학교의 교장/대리인이 결석 사유로 제시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으며, 또한 (b)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설명이 충분한 결석은 학교의 출결 정책에 따라 사유가 인정된 결석에 반드시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 파악

학교는 반드시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학생을 파악해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ACS와 NYCPS의 기존 데이터 매치를 이용하여 NYCPS는 OASIS 데이터 시스템에 반영된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의 목록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는 학교가 아동 복지중재 관련 학생의 목록을 받고 검토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반드시 추가 정보가 있을 때 목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 a. 학생들이 위탁 보호에 들어가거나 나가게 되면, 기관은 학교에 알림 통지문을 보낼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반드시 즉시 OASIS에 입력되어야 하며, 위탁 보호 학생 목록 또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1

2. 본 규정에서 아동 복지 관련 학생은 다음 중 단계 I, II, 또는 III에 해당합니다.

a. 단계 I

단계 I에는 다음 조건 모두가 충족하는 학생을 포함됩니다:

- i.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유아원에서 8학년) 그리고
- ii. SCR 신고서에 현재 ACS 조사 중이라고 명시된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이 법원 명령 감독 하에 있는 경우

b. 단계 II

단계 II에는 다음 조건 모두가 충족하는 학생을 포함됩니다:

- i.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유아원에서 8학년) 그리고
- ii. 현재 또는 지난 학년도에 ACS 조사로 입증된 SCR 신고서에 명시된 아동

c. 단계 III

단계 III에는 다음 조건 모두가 충족하는 학생을 포함됩니다:

- i.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유아원에서 8학년) 그리고
- ii. 현재 위탁 보호 중인 아동(시험 방면(trial discharge) 포함).

c. 검토 및 평가

학교는 반드시 가정과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의 출석을 검토하는 다음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1.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각 아동 복지 중재 관련 개별 학생에게 학교 교직원을 배정하여 매일 출석을 확인하고 일일 결석 전화를 학생 별 상황에 맞게 진행하며 해당 학생과 그 학생의 학업 기록에 대한 숙지를 하게 하여 학생의 필요를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또한 반드시 정기적으로 학급 교사와 학교 보건실에 문의해야 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해당 학생들의 ILOG 또는 후속 시스템(이를 모두 "ILOG"라고 함) 기록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결석 시 가정에 연락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a) 학교의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 목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b) 아동 복지 중재 관련 유아원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2

ATS(Automate the Schools) 또는 후속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관련 지표를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c) 본 규정의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의 지정된 대리인, 출결 코디네이터 및/또는 이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책임지는 교직원이 일일 출결 현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4.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이 결석하는 모든 수업일에 지정된 학교 교직원은 반드시 당일 가정에 연락해야 하며 학부모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의 IV.A.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학부모가 사유를 제시하면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지정된 학교 교직원과 상의하여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가 적절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5. 지정된 학교 교직원은 반드시 각 결석일에 대해 iLog에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a) 학부모 연락 여부, 학부모가 제시한 결석 사유 및 사유의 적절성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또는 b)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연락 시도와 연락이 닿지 않음을 명시. 아래 섹션 IV.D.에 명시된 상황의 경우 결석을 반드시 ACS에 보고해야 합니다.
6. 매주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정기 학교 출결팀 회의, 학교장 주재 임원 회의 또는 기타 주간 YTD 출결 보고서를 검토하는 교내 회의에서 YTD 출석률과 아동 복지 관련 학생들의 총 결석일 및 지각일을 추적해야 합니다.

D. ACS 또는 ACS 기관 파트너에 우려 필수 보고

1. 단계 학생의 결석 첫날,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결 코디네이터/학교장의 대리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a)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b)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학교장이 연락을 한 교직원과 상의 결과 학부모가 제공한 결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그 설명이 학생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c)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학부모가 결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예: 학부모가 전화를 끊거나 학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 출결 코디네이터/학교장 대리인은 반드시:
 - a. 즉시 배정된 ACS 팀 또는 ACS 기관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결석 및 연락 시도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그리고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3

- b. 학교가 ACS에 연락한 내용을 ILOG에 기록해야 합니다.
 2. 단계 II 및 단계 III 학생의 경우, 3 일 연속 결석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결석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학교장이 연락을 한 교직원과 상의 결과 결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교직원은 반드시:
 - a. 즉시 ACS 교육 담당실에 전화 212-453-9918 또는 이메일 Education.unit@acs.nyc.gov로 연락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위탁 보호 제공 기관에 연락하여 학생의 결석과 연락 시도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 b. 해당하는 ACS 사무실 파트너에게 학교가 연락한 내용을 ILOG에 기록해야 합니다.
 3. 배정된 학교 직원은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NYCPS 위탁 보호 사무실](#)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E. SCR 에 우려 보고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이 아동 학대나 부당대우 대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반드시: (a) 섹션 II.D.에 따라 의심 사항을 즉시 SCR 에 보고해야 하며, (b)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ACS 사무실 또는 위탁 관리 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교직원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아동에게 의료 케어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교직원은 911 에 전화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출석 불량 만으로는 SCR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출결 문제는 관련 ACS 팀 및/또는 기관 제공처에게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V. 신고자에 대한 법적 문제

A. 책임 면제

선의로 신고, 사진 촬영, 아동의 격리 및 보호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 법의 다른 조항 및 본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 모든 학교 교직원은 본래 그러한 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었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고용의 범위 내에서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4

자신의 의무를 수행 중이며 신고, 사진 촬영, 아동의 이동 또는 유지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법 조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 서비스 정보 공개에 고의적 비행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선의의 신고자로 간주됩니다.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B. 신고하지 않은 경우 책임 및 처벌

직원이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혐의를 고의적으로/또는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 소추당하거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NYCPS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 보복 조치 금지

학교 및/또는 NYCPS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관련해 직원에게 보복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D. 학교 교직원 소환 서비스

학교 교직원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즉시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출두 소환장의 경우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십시오. 기록에 대한 소환장은 DOESubpoenas@schools.nyc.gov으로 연락하십시오.

소환장이 정부 기관에서 발부된 경우, 교직원은 소환장에 표시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대기 중인 법원 출두에 대한 전화 연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 연락을 요청해 두면 학교 직원은 법원에 직접 출두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법원에 출두할 때에는 그 전에 정부 변호사를 만나 심리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직원은 변호사에게 증언에 나서기 전에 법원에 있는 개인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 법적 변호를 요청할 직원의 권리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해 본인에게 제기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뉴욕시 법무부의 변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5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이 공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NYCPS 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법적 변호 및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및 부당행위 혐의를 신고한 사실 때문에 선의의 신고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소 당한 신고자에게는 법적 변호가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신고와 관련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신고자는 ACS 안전 우선 담당실에 718-543-7233 로 전화하십시오.

VI.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의 책임

A. 학교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

1. 각 학교장은 반드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과 함께 팀의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정직원, 가이드스 카운슬러, UFT 대표, 학부모 대표, 기타 학생 개인 서비스 대표 및 학교 리더십 팀 대표.
2. 각 학교장은 학교의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의 일원을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의 연락 담당으로(연락 담당자로 칭함) 지명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학교, ACS 및 위탁 보호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를 증진하며, 인신매매 및 착취를 포함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우려 사항의 핵심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3. 학교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팀은:
 - a. 매 학년도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연례 "종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의 일부로 매년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및 개입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계획은 반드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에 대한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및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수와 학부모 및 학생 교육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섹션 VII를 참고하십시오).
 - b.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의 학생 서비스 매니저와 협력하여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에 대한 연수, 리소스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팀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계약 조건에 맞는 리소스와 지침 준비 및 연수 제공을 위한 교직원 컨퍼런스 및 준비 시간을 사용합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6

- c. 지역 사회보장 기관을 이용하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에 대한 서비스/연수를 제공합니다. ACS 교육 부서는 교내 연수에 ACS 직원 참여를 조정합니다. 연수 요청은 이메일 education.unit@acs.nyc.gov 또는 전화 212-453-9918로 연락하십시오.

B. 수퍼인텐던트 사무실

1. 수퍼인텐던트는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사안에 대응하는 학교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 일반적으로 학생 서비스 매니저 또는 그 후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책임집니다:
 - a. 각 학교의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 계획을 검토, 평가 및 승인합니다.
 - b. NYCPS 아동 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NYCPS 뉴욕시 코디네이터, SCR, ACS 및 기타 서비스 제공처와의 연락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 c. 학교 직원,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ACS, 커뮤니티 기관 및 기타 서비스 제공처와 업무 관계를 구축합니다.
 - d. SCR에 신고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고, ACS와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합니다.
 - e. 섹션 VII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 연락 담당자 및 학교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팀에게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정책과 예방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2. 대리인은 또한 섹션 IV.C에 따라, 학교가 해당 학교의 아동 복지 중재 관련 학생 목록을 받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VII.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및 학생 교육

A. 교직원 연수

1. 매년 모든 연락 담당자는 반드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의심 파악 및 신고와 NYCPS 신고 프로토콜에 대한 연락 담당자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 모든 학교 교직원에게 반드시 본 규정에 명시된 신고 및 기타 책임 수행에 대한 연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수는 반드시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7

- a.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의 징후
 - b. 언제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및 어떻게 ACS 조사에 협력하는지를 포함한 본 규정의 요건
 - c.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사건이 신고되기 이전, 도중 및 이후에 학생 및 학부모를 관리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
 - d. 비밀 보장 요건, 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신고 관련 법률적인 측면과 이와 관련된 함의
 - e.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리소스
3. 연락 담당자 및 학교 간호사는 반드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부상을 사진 촬영하는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간호사가 학교 빌딩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사진 촬영을 위해 학교장이 지명한 대체 직원과 이 목적으로 지명된 다른 추가 직원이 섹션 II.F.1에 따라 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B. 학부모 참여

1. 모든 학교는 반드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방지 및 개입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대 및 부당대우 의심 사건 신고에 대한 학교의 의무를 포함한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관련 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또한 학교-학부모 공동 지원 그룹의 결성 및 자녀 양육 요령을 배우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 교육 활동은 긍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 보호 및 가족 지원에 학교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3. 학부모와 학생에게 직접적 및 간접적인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ACS 지원 라인 (212) 676-7667)을 통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서비스 및 구체적 서비스는 SCR에 전화하지 않고도 커뮤니티 제공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PS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NYCPS-ACS 교육 방임 신고 공동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8

c. 학생 교육

1. 학교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a.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성적 학대 및 성폭력에 관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정보 및 활동, 그리고
 - b. 예방 전략 및 개인 안전 스킬 개발에 관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정보.
2. 모든 K-8학년 학생들은 아동 착취와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 리소스는 Infohub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대 또는 부당대우(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납치, 가정 폭력, 훈육, 데이트 폭력 상황 포함)를 당했을 때 도움과 개입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VIII. NYCPS 직원에 의한 위법 행위 신고 의무

모든 NYCPS 직원이나 공무원은 학교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NYCPS 직원 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개인에 의한 학생 대상의 성적 학대 및/또는 위법 행위에 대해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뉴욕시 학군 담당 특별 조사관(Special Commissioner of Investigation for the New York City School District)에게 보고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NYCPS 직원이나 공무원이 앞서 언급된 위법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해당 공직이나 직업 해고의 원인이 됩니다.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특별 조사관(Special Commissioner of Investigation)에게 보내는 어떤 신고도 [교육감 규정 A-820](#)에 따라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 조사관 연락 정보:

212-510-1400

80 Maiden Lane - 20th Floor

New York, NY 10038

<http://nycsci.org/>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29

IX. 통지

- A. 각 학교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750 하이라이트" 사본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양식 사본은 [NYCPS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B. 각 학교장은 반드시 교직 및 비교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교육감 규정 A-750 하이라이트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C. [교육감 규정 A-750](#) 사본을 요청하는 교직원에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 D. 각 학교는 다음과 같이 OCFS 아동 학대/부당대우 전화 핫라인 번호, 예방 지원 서비스 연락처 정보 및 OCFS 웹사이트 이용 방법을 영어, 스페인어 및 교육감 규정 A-663에 따라 지정된 지원 언어로 공지해야 합니다:
 - 1. 게시: (a)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신고를 받는 OCFS가 운영하는 무료 전화번호(1-800-342-3720) 및 (b) OCFS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 <http://ocfs.ny.gov/main/cps/>.
게시물 사본은 [NYCPS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 게시: (a) ACS 예방 지원 라인 번호 (212-676-7667) 또는 이메일 connect@acs.nyc.gov,
(b) 해당 정보는 NYCPS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학교 건물의 눈에 잘 보이는 구역 및 학교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 해당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 3. 전자 커뮤니케이션, 학생 편에 보내는 통지문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년도 중 최소 한번 이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
 - 4. 학교의 각 교사 및 행정직원에게 이 정보 제공
 - 5. 학군 및 학교 차원의 사무실에서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X. OORS 신고

A.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OORS 신고

학교장/대리인은 아동 학대 또는 부당대우 신고가 SCR 에 되었을 때 SCR 신고가 되었음을 보고받고 "콜 I.D." 번호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OORS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OORS 보고서에 "콜 I.D."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자 관련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보고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 학생

발행: 2026/6/18

번호: **A-750**

제목: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페이지: 30 중 30

NYCPS OORS 웹사이트: <https://apps.schools.nyc/ospp/>.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The 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에서 기술적인 질문에 응대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7:00 AM – 7:00 PM 입니다. 헬프데스크에 연락하시려면 718-935-5004 로 전화하여 OSYD 웹 지원(Web Support)을 요청하십시오.

XI. 기술적 지원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은 본 규정을 이행하고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 및 개입 계획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 학대 및 부당대우 예방에 대한 모든 연수와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교 관계자를 위한 추가 아동 학대 예방 자료와 리소스는 [NYCPS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은 뉴욕시 아동 학대/방치 예방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연락 정보는 섹션 XI 참고).

XII.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전화번호:

212-374-0805

뉴욕시 코디네이터

아동 학대/방치 예방 프로그램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5751